

3대 전문인양성교육제도의 개혁방향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3대 전문인’ 양성교육을 중심으로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1. 머리말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개혁퇴색 또는 개혁상실로 치닫는 듯한 시점에서 화려하게 등장시킨 매뉴얼 교육개혁과 사법개혁이다. 그러나 초기의 요란스런 소리와는 달리 개혁에 대한 이정표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역시 그렇지.’ 하면서 냉소적인 전망을 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방관자적인 냉소주의가 아니라 비판적 주체가 되어 개혁을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것으로 만들려는 참여의식과 실천지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글도 이러한 자의식 아래 전문인 양성교육의 개혁과 사회개혁이라는 큰 틀 사이의 내

부적 연관성을 중시하면서 서로 유리되어 진행되는 듯한 (그래서 본질적인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한) 개혁방향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보다 유기적 결합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대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둘째로 이를 방향과 접목 가능한 전문영역의 개혁방향을 논하며, 셋째로 이를 전문인의 양성교육에 대한 개혁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들에 관한 논의는 지면제약상 각기 분리시켜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미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구체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료개혁 또한 머

지 않아 우리 사회의 개혁대상으로 떠오를 것이고 또 떠올라야 할 사회적 과제이므로 이 논의에 의료개혁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교육개혁은 교육전반에 걸친 논의가 아니라 단지 사법대학 개편에 관한 논의에 국한시키겠다.

이 글에서 전반적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접목되는 개별영역의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현존 개혁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의 장기적 구도 아래 목적합리성에 기반한 개혁청사진이 아니라, 단기적 구도 하의 기술합리성의 기준 아래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개혁의 좌표

우리 사회는 이제 사회 전반이 본질적인 질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요구는 밖으로는 탈냉전, 새로운 세계질서, 국가사회주의체제의 소멸, 지구촌화의 확산 등에 의해 비롯되었고, 안으로는 군부독재의 종결, 국가권위주의 몰락, 시민사회의 성장, 한 사람에 대한 국민총생산액이 1만 불에 육박하는 경제적 수준향상 등에 힘입고 있다. 또한 민족사적으로는 민족사적 전환기인 통일시대가 열리게 되어 머지 않아 남과 북이 동질성을 되찾아 민족공동체로 복원하게 되는 데서 오는 요구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변화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선택적으로 크게 세 가지만 다루겠다. 첫째는 민족사적으로 자주 통일시대를 맞아 민족공동체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기반 조성이다. 둘째는 이제까지 안보논리에 의해 또는 성장제일주의 논리에 의해 유보를 강제당했던 신체의 구금이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권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존권이라는 인권의 보편화이다. 셋째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화의 구현이다.

교육개혁 또는 사법개혁 등에 관한 정부나 여러 집단의 논의는 주로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의 강화라는 차원, 곧 기술합리성을 제고하는 개혁지향이다. 보다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목적합리성 제고의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통일기반 조성

1988년의 6·10 통일운동과 1990년대의 세계사적 전환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 민족재통일 시대를 맞았다. 통일시대의 민족사적 요구는 남과 북이 서로간의 상극성과 이질성을 줄이고, 공통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서로가 접목 또는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통일기반 조성에는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남과 북이 서로간의 체제를 여러 영역에서 서로 수렴시킬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확산시키는 접근이다.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의 기존 체제와는 상관없이 또는 초월하여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접근이다. 물론 새로운 체제이전 수렴체제이전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고 역사적 진보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체제로의 지향이라는 전제를 만족시켜야 한다.

남과 북의 전반적 특성을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화한다면 남은 개인주의, 경쟁주의, 상업주의, 선택의 다양성, 수요공급 원리의 지배성, 불평등주의 등이고 북은 집체주의, 획일주의, 대중주의, 평등주의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간의 대치적 특성은 서로간에 배타적 대립관계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 가까워지려는 목적의식적 노력에 의해 수렴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수렴지향은 인류보편적 가치지향과도 접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을 남과 북의 기존체제가 서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수렴지향적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시대의 민족적 과제인 통일이 구현될 수 있다. 우리의 전문인 양성교육도 바로 이러한 민족사적 장기구도와 유리될 것이 아니라 결합되는 개혁으로 방향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사적 요구와 과제에도 불구하고 통일기반 조성은 커녕 조문파동, 핵파동, 경수로 출다리기 등으로 남·북 적대관계만 강화한 게 현정권의 실상이다. 이러한 정권의 한계가 노정되면 될수록 우리 모두는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진작시킬 뿐 아니라 사회전반적 개혁프로그램에 남과 북이 서로 함께 할 영역을 부단히 확장하여 공통의 장을 넓혀야 할 민족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2) 자유권과 기초생존권의 보편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신성시되어 왔던 안보논리와 성장제일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사장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천부적인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를 핵심으로 한 자유권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생존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권은 실정법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적인 보편적 가치가 현실에서는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침해, 이용, 왜곡되어 인류보편의 가치란 고귀한 빛은 퇴색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존권은 무시한 채 한쪽만의 인권이 전부인 양 일컬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강제적으로 유보되었던 시민일반에 대한 자유권과 기초생존권의 보장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기초생존권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주로 사회복지 영역인 소득보장제도, 의

료보장제도, 아동보육제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질적 향상을 통하여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를 포함한다.

또한 최소한 중등교육 수준을 의무교육화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지적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의 보편화 등도 이에 포함된다. 자유권은 일반시민이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고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화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은 바로 이들 자유권과 기초생존권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개혁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도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자유권과 기초생존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生存權)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1,2항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生活權)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언급은 이러한 인권차원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경제경쟁의 차원에서 개혁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사법개혁이나 의료개혁 등 여타의 개혁도 전반적인 사회개혁이라는 기본 지향과 유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김 대통령은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우리 교육은 양적 팽창에 상응할 만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21세기 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교육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혁프로그램을 경쟁력 강화라는 수단합리성 제고의 수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

나라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목적합리성 수준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민주화의 진척과 일상화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긴 하지만 포괄적인 개념 규정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하나는 의사결정 구조에 다수의 참여(참여권)와 그들의 의사가 반영(의결권)될 수 있는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 다수가 각기의 생활영역에서 권력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서구식 민주주의로 통치형태에서 다수당의 참여와 지배엘리트의 선출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일컫는다. 이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 국한시킨 논의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제는 앞의 정치적 수준의 민주화 못지 않게 우리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걸쳐 시민다수가 주인이 되는 권력주체화의 정도에 놓여 있다.

요즘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대학이 자체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으레 학교당국이나 재단 등에 국한되고, 대학의 가장 큰 주체인 교수회나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이는 학생과 교수가 권력주체가 되지 못하는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법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등도 바로 대학의 개혁과 같이 그 영역에 종사하는 엘리트 위주의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대중이 각기 영역에서 단순한 객체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객체이면서 권력주체가 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러한 지향이 우리 사회 전반에 나아가야 할 사회개혁의 큰 과제인 민주화의 일상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권력주체화는 제도적으로 객체인 시민이나 공민이 제도 그 자체나 그 종사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3. 3대 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사법영역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자유권 침해로부터 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의료영역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인간의 기초생존권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공교육은 누구든지 최소한의 지적 자산을 소유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서 인간기본권의 기초이다.

따라서 이를 세 영역은 모든 사회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능적 필수요건(functional indispensability)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렇다면 교육, 사법, 의료의 세 영역은 사회의 기능적 요구를 원만하게 충족하여 그 기능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미쳐 사회적 통합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대중성과, 대상이나 혜택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곧 기능상의 대중성과 수혜수준의 보편성이 바탕이 되어 일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기능상의 대중성과 수혜수준의 보편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인들의 공급이 충분해야 한다. 기능인에 대한 희소성이 따르면 희소가치와 수요·공급이 철칙으로 작용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서는 이들 기능인들이 엘리트화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 특권층만 혜택을 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과 돈이 없기 때문에 병이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 곧 반인륜적인 현상들이 범람하게 된다.

법률조문 암기위주의 편협한 사법고시를 통해 절대적 숫자를 제한하는 일본제국주의 정체

을 해방된 50년에도 그대로 시행하면서 법조계의 기고만장한 엘리트주의와 특권주의를 강화·재생산하는 반자유권적인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의사협회를 통해 의사의 숫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의사들의 초집단이기주의는 더 이상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일반의 기초생존권을 볼모로 자기들의 초특권을(전문의 초임이 무려 월 4, 5백만 원에 육박하는 현실 등) 쌓아가는 반기초생존권성을 종식시켜야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인간 기본권에 종사하는 교원들의 경우, 이러한 양적 제한으로 인한 특권화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바로 의사나 변호사들도 교원자격증 소지자만큼 양산해야 한다.

이를 통한 탈엘리트화나 탈특권화는 민주주의의 시민주권화 또는 시민들의 권력주체화에 긴요하고 또한 북한이 최소한 공식적으로 지향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와도 수렴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통일기반 조성에 역시 필요하다.

둘째, 기능인들을 지나치게 전문화하게 되면 기능상의 대중성을 상실하기 쉽다. 기본적인 의료, 보건위생, 법률적 보호, 기초교육 등에 꼭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영역내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더 필요하다.

핵심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명의식 아래 얼마나 효율적으로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과다한 전문인의 양산은 오히려 이들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빌미로 자기들의 특권화를 요구하고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신비화하는 기술신비주의에 빠져 대중을 위한 공공성이 상실되기 쉽다.

우리 의료계는 대부분의 의사가 전문의이고 전문의 지향적이다. 의사집단을 특권화하는 여

러 메커니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전문의 양 산제도이다. 또한 남한의 의사 처방전은 모두 영어로 표기하게 한다. 그것도 일반인이 보면 전혀 알아볼 수도 없는 외계인(外界人) 식의 글씨를 통해 자기들 고유영역임을 과시하고 자기 권위의 성역을 구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분명히 또록 또록하게 처방전을 써서 어느 약국에서도 그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자기 병원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처방전을 읽을 수도 없어 다른 곳에서 약을 구입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법조계는 전문적 지식도 전혀 갖추지 못한 한심한 수준이면서도 엘리트주의만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어느 명문대 법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이 법원에 재판과정을 견학하였다 한다. 그날 밤 그 신입생은 밤새도록 울었고, 굽기야 자신은 더 이상 법대에서 공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다. 이에 혼비백산한 어머니가 필자에게 하소연하기를 재판과정에서 판사(주로 보조판사일 것으로 생각된다)가 거의 처음부터 졸고만 있었고, 주판사는 피고인의 사정이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답적인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법대 신입생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반대중적인 법조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신입생이 법조계에 남아야 한다고 설�했다.

필자의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몇 번이나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또 증인으로 나갔지만, 한번도 보조판사가 졸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그것도 잠시 조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조는 것을 보니, 존다는 것이 관례화된 것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법정에 가서 그 ‘고귀하신’ 판사나리들이 입장하면 방청객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특권의식을 따르기를 거절해 왔다.

지금 사법개혁이나 교육개혁 논의에서 사법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을 신설한다고들 한다. 대학원을 굳이 반대할 수는 없지만, 만약 대학

원과정이 이러한 엘리트주의나 특권주의를 근원적으로 치유하여 대중성 또는 인민성을 담보하지 않을 경우, 고학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더 엘리트주의로 치달을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경우, 지금 현재 상당히 대중성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굳이 교육대학원을 둘으로써 이제까지 확보해 놓은 대중성마저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문화는 반대중화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사유화와 탈사유화, 시장화와 탈시장화를 결합시켜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 3개 영역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적 인권인 자유권과 기초생존권의 핵심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비록 아무리 자본주의사회라 하더라도 전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선진자본주의에서 국가책임 아래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어 온 사실은 기초 생존권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탈시장 및 탈사유화가 사회통합이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물이다.

우리는 독일통일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서독은 그 사회체제 자체가 ‘동독보다 더 동독화한 서독’, ‘사회주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서독’이라고 하고, 이러한 서독의 사회민주주의적 특성이 통일을 가능케 하였다고들 이야기한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기초생존권이나 자유권 등이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흔히 스웨덴을 지목한다. 스웨덴의 경우, 노동력 고용 자체가 전통적인 자본주의권과는 달리 상당부분 탈노동 시장화되어 있다. 사회화되지 않은 시장의 (unsocialized market force) 무정부적 채찍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임노동자투자기금과 공동결정법 등으로 자본가의 무한한 권력과 횡포를 통제하는 스웨덴식 방식은 서독과 북구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사회의 전강성과 통합성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의료제도의 경우, 영국을 비롯한 대부

분 유럽 선진국들은 기초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국가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사들이 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에 봉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경우도 의무교육을 보편화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도 우리와 같은 등록금의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거의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록 기초생존권의 보호와 같은 탈시장화는 아니더라도 사법적 차원에서 이들 나라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여러 사항을 사유화와 탈사유화, 시장화와 탈시장화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의 통합과 재생산을 꾀하고 있는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대폭 수용할 필요가 있다.

탈사유화와 탈시장화는 또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사회개혁의 좌표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북한의 경우 충분히 예견되지만 이들 영역은 전적으로 탈사유화와 탈시장화되어 있다. 북한 의료의 경우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 등으로 철저히 기초생존권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교육 또한 무상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대중성을 담보하면서 운영되고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때로는 관료주의화로 인해 인민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되리라 예견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합리성의 문제이고, 목적합리성은 철저하게 기초생존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록 통일한국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탈시장과 탈사유화는 추진되어야 할 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민주적 통제의 강화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는 투표와 같은 참여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결정권, 권력주체로서의 통제권이 확보 및 강화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민주화는 지금 현 시점에서도 또 21세기에도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육, 사법, 의료 등에 과연 객체이면서 주체이어야 할 일반시민들이 민주적 참여나 결정 및 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은 민주성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한다.

먼저 우리의 사법분야는 가장 반민주적인 분야의 표본이다. 아마도 일반시민이 재판관을 직접 뽑는 민주적 통제권인 재판관 공선제나, 일반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권과 의결권이 행사되는 참심재 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 남한이 유일할 것이다. 21세기의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자는 정부의 목소리는 약방에 감초처럼 어느 곳에서나 메아리치고 있지만, 정작 거의 모든 나라가 보편화하고 있는 사법민주화의 초보적 잣대인 공선제와 참심재는 사법개혁안에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특별검사제의 도입,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 검찰총장의 철저한 임기제와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 공직의 금지, 개별검사의 수사권 독립성을 저해하는 위계명령식의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개폐, 검찰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민주시민의 통제장치 등을 사법개혁의 내용에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분야 역시 사법분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의사와 3분 면담하고 진찰받기 위하여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는 의료제도에서 철저히 '대상'에 불과하고 100퍼센트 객체일 뿐이다. 특권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일반환자는 0.001퍼센트도 주체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주눅이 들어 왜 아픈지, 어떤 종류의 치료법이 가능한지, 일반적 증세

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 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민주적 통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교육분야 역시 위계적 구도 아래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주인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안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일반시민의 참여권, 결정권, 통제권을 여러 영역에서 제한하고 유보할 수 없다. 이제는 정치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4. 맷음말 : 전문인 양성교육개혁과 사회개혁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교육개혁, 또 일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료개혁 등에 관한 문제점을 이제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겠다.

첫째, 정부나 관계집단들 모두 각 영역별로 개혁프로그램을 입안할 때에 우리 사회 전체가 장기적 구도하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인 텔로스 (Telos)를 설정하여 이 텔로스와 내적 연관을 지닌 총체화된 개혁프로그램이 아니라 각기 개별영역의 기술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혁안을 상정하고 있다.

민족사의 구도하에서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민족적 과제, 민주화의 생활화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구현, 기초생존권과 자유권이라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기본권 실현 등과 같은 좌표, 곧 목적합리성과 결합되지 않아 과편화되고 있다.

둘째, 사법개혁이나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논의가 법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개편안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제도, 의료제도 전반의 틀을 새로 짜는 데에 있다. 전체 제도의 부분집합인 대학교육의 개편은 극히 일부분의 필요조건에 불과하지, 결코 필요·충분조건에 버금가는 것은 아니다. 교육개혁 또한 사법대학 개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전문인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각 대학은 꼭 해당분야의 기계적 전문기능인만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계적 전문기능인 못지 않게 사회기능인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전체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사회적 통합기능과 재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고 존속가능하다.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제도가 각기 개별 전문영역의 기계적 기능인만을 양성하고 사회 전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인의 양성을 소홀히 할 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영역은 서로 파편적으로 충돌하고 갈등하여 통합성을 깨뜨려 전체 사회의 자기 교정력이나 재생산력을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법조인·의료인 집단이 기주의 등은 상당부분 파편적인 교육지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주제로 T·V 대담에 출연한 어느 재벌회사의 인사관리이사는 요즘 신규채용한 대졸사원들은 전혀 일을 하지 못하여 전면적인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도대체 대학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과연 대학교육이 그 기업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적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굳이 대학 졸업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 기업에서 기술학교를 만들어 충원하면 된다.

장기적 잠재력의 양성과 사회의 청량제로서의 교정능력을 대학생에게 불어 넣어 주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전체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재

생산에 기능하는 사회적 기능인 양성이 기계적 전문인보다 상위 차원에 놓여 있음을 우리 대학인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양과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넷째, 3대 전문인 양성 교육개혁과 전반적 교육개혁 논의에서 지나치게 수요·공급이라는 시장논리와 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경쟁의 일상화는 우리 교육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새삼스레 세계화 담론이 기승을 떨면서부터 월반속진제, 고교평준화 폐지, 교원자격연한제, 수석교사제, 대학평가제와 차등지원제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2~3개의 과외 교육을 받으며 경쟁무대로 뛰어들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요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1세기 정보통신사회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거론되고 있는 월반제 등과 같은 경쟁의 일상화로 국제경쟁에 대응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내용의 다양화, 개성화, 창의성, 자주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다.

사범대학을 폐지하고 교육대학원 위주로 중·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한다는 발상도 수요·공급이라는 시장논리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곧 공급초과인 사범대 졸업생에 대한 대책으로 사범대를 아예 없애고 교육대학원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사실인지 확인할 바는 없으나, 이러한 구도에서 사범대학 개편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 기능인과 교원으로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범대학 개편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에서 일부 파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까지 다루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 논의가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민주화의 일상화, 인간 기본권의 보장과 준수의 보편화, 통일기반의 조

성이라는 텔로스와 결합되지 않을 때는 구호정치의 대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최근 법치주의의 최선봉이어야 할 검찰이 노동쟁의 조정법 제9조(“쟁의기간중에 있는 노동자는 현행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를 ‘위배’ 또는 ‘무시’하고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이나 쟁의와는 ‘별개’에 해당하는 수개월 전의 장관실 점거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또 전격연행했다. 아무리 국가전반에 중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이 규정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자유권의 보호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위배할 수 없고 또 대통령이라면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도 ‘헌법과 노동법의 취지를 국가기관이 먼저 무시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몇몇 개혁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질적 전환을 가져올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도 민주화, 특히 시민이나 공민의 민주적 통제권이 우리 사회개혁에서 가장 핵심에 놓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정적 징표인 것 같다. ■

강정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좌절된 사회혁명』, 『북한의 사회』 등이 있고, “미국과 한국전쟁”, “이승만의 민족사적 평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